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23조)
-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외 16개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임(안 제23조).
-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선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어린이집 위탁 선정의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한 것임.
-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21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신설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

- (현행) : 계약일로부터 3년
- (개정) : 계약일로부터 5년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미반영 용어 정비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변경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 4. 12 ~ 4.18)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취학전”을 “취학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 자로서”를 “밖의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람로서”을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4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21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을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형사처벌을받았을 때”를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는”를 “수탁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로 한다.

제27조 중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제、개정”을 “제정、개정”으로 한다.

제31조제9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교부를”을 “지급을”로 한다.

제3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u>취학전</u> 아동을 말한다.</p> <p>2. 3. (생략)</p> <p>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u>밖의 자로서</u>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사람로서</u>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p> <p>6. (생략)</p> <p>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u>당해 위원회</u>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3. (생략)</p> <p>제10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때에</u> 위원장이 소집한다.</p> | <p>제2조(정의) ----- -----.</p> <p>1. ----- <u>취학 전</u> -----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밖의 사람으로서</u> ----- -----.</p> <p>5. ----- ----- ----- <u>사람으로서</u> ----- -----.</p> <p>6.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임기) ----- ----- ----- <u>남은 기간</u> ----- -----.</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u>위원회</u> ----- -----.</p> <p>②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우</u> -----.</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 ⑤ (생략)</p> <p>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p> <p>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⑤ (생략)</p> <p>제18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생략)</p> <p>제19조(위탁운영) ① (생략)</p> <p>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p> |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인정하는 경우-----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구성) ① ----- ----- ----- 필요한 경우----- -----.</p> <p>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사람----- -----.</p> <p>③ 보육전문요원----- -----.</p> <p>④,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

| 현행 | 개정안 |
|---|---|
| <p>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0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21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u>보육시설</u>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p> <p>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략)</p> <p>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u>소요되는</u>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p> <p>⑦ (생략)</p> <p>제2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u>계약일로부터 3년</u>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시설장</u>,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p> | <p>----- ----- <u>등은</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위탁계약) ----- ----- <u>밖의</u> ----- ----- -----.</p> <p>제21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 ----- <u>어린이집</u>----- -----.</p> <p>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u>현행과 같음</u>)</p> <p>⑥ ----- ----- <u>필요한</u>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23조(위탁기간) ----- <u>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u>----- ----- -----.</p> <p>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원장</u>----- ----- -----.</p> |

| 현행 | 개정안 |
|---|--|
| <p>태료 처분 및 <u>형사처벌을받았을 때</u></p> <p>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p> <p>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u>제·개정</u>에 관한 사항</p> <p>2. ~ 5. (생략)</p> <p>⑥ (생략)</p> <p>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u>소요되는 비용</u></p> | <p>-----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p> <p>② ----- 수탁자에게는-----.</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p> <p>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 있도록 -----.</p> <p>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1. ----- <u>제정·개정</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1조(비용의 보조 등)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필요한</u>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32조(보조금의 반환)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지급</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거짓이나 그 밖의</u> ----- ----- <u>지급을</u> -----</p> <p>제34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